

2021. 7. 22. ~ 7. 26.
- 5일간 -

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의안 번호	의안명	의결 일자	심사 결과
2147	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21.7.26.	원안가결
2148	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21.7.26.	원안가결
2149	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21.7.26.	원안가결
2150	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21.7.26.	원안가결
2151	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	2021.7.26.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- 제출일자 : 2021. 7. 15.
- 제안이유
 - 국가사업, 지역 현안사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: 638명 → 670명(32명 증)
 - 직종·직급별 정원증원 내역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일 반 직					정무직	별정직	연구직	지도직
		계	4급	4~5급	5급	6급이하				
현행	638	612	3	2	33	574	1	1	3	21
개정	670	643	3	2	33	605	1	1	3	22
증감	+32	+31	-	-	-	+31	-	-	-	+1

※ '20 ~ '21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정원 미반영분 증원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)
- 제출일자 : 2021. 7. 15.
-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서는

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제한

○ 주요 내용

-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(안 제6조)
 - (현행)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
 - (개정)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
-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8조)
 - “업무담당” (현행)을 “업무팀장” (개정)으로 수정
-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(안 제11조)
 - (현행)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7. 15.

○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수정
-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심의절차 수행

※ 조례 내 장애인 차별적 표현(심신장애)에 대한 개정요청
(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-14853(2019. 12. 12.)호 관련

○ 주요내용

- 지적재조사위원회 역할 수정(안 제2조)
 - (현행) 지적재조사특별법 제12조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
 - (개정) 지적재조사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
-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·의결 내용 신설(안 제6조)
 - (신설)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신설
-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(안 제7조)
 - (현행)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
 - (개정)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법률용어 수정(안 제8조)
 - “일필지조사” (현행)을 “토지현황조사” (개정)으로 수정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출자 : 차상현 의원

○ 제출일자 : 2021. 7. 21.

○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른 노외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

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- 또한,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편의시설 기준 신설(제8조제2항)
-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 단서 조항 삭제(제11조제2항)
-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(별표 8의 제5호)
 - 전용면적 60㎡ 이하: 세대당 1대 이상
 - 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 이하: 세대당 1.3대 이상
 - 전용면적 85㎡ 초과: 세대당 1.5대 이상
- 원룸형 주택에 관한 예외 조항 신설(별표 8의 제5호의2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동화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

○ 제출일자 : 2021. 6. 3.

○ 제안이유

- 동화·황룡면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고 품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화 119지역대 건립에 필요한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무상 사용허가 현황(신축부지)

- 대 상 지 : 동화면 남평리 1059-4(동화전자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용지)
- 사용면적 : 총 6034.1㎡ 중 900㎡
- 소 유 자 : 장성군수
- 사 용 자 : 전라남도지사
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5년(5년마다 연장)

- 청사 신축 및 소방력 배치(안)

- 추진주체 : 전라남도
- 위 치 : 동화면 남평리 1059-4
- 규 모 : 대지 900㎡, 건축면적 246.39㎡, 연면적 327.41㎡
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 1동 2층
- 층별구성 : 1층(차고, 사무실, 대기실), 2층(의소대 사무실, 회의실)
- 소요사업비 : 11억원 정도(전라남도 예산)
- 소 방 력 : 인원 9명, 장비 2대(중형소방펌프차, 구급차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